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등〉

- | | |
|------------------------------|------------------------------|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28호) |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99호) |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69호)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00호) |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78호) |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76호) |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80호)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75호) |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07호)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84호) |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44호)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86호) |
|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59호) |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592호) |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02호) |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93호) |
|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59호) |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03호) |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제목 차례>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1
-----------------	----

1.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연장(이만희 I·Ⅲ·이성권 I·신성범 I 의원안) ·	21
2.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연장(이만희Ⅱ의원안)	29
3. 농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이만희Ⅳ·이성권 I·신성범 I 의원안)	33
4.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연장(이성권 I·신성범 I 의원안)	40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철수·엄태영의원안)	48
6. 공익적 목적 사용 종교단체 취득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신성범Ⅱ의원안)	54
7.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박정하의원안)	60
8.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김태선Ⅱ·김은혜 I 의원안)	64
9.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김태선Ⅱ의원안)	74
10.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김태선 I 의원안)	79
11.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정비(김은혜Ⅱ의원안)	84
12.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자에 대한 감면 신설 등(박충권의원안)	90
1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김병주의의원안)	98
14.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재신설(이성권Ⅱ의원안)	104
1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신설(이상식의의원안)	108

I. 개요

【이만희(I)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김태선(I)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설계·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이만희(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2. 2.

다. 회 부 일 : 2026. 2. 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김태선(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2. 2.

다. 회 부 일 : 2026. 2. 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이만희(Ⅲ)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3.

다. 회 부 일 : 2026. 2. 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이만희(Ⅳ)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4.

다. 회 부 일 : 2026. 2. 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김은혜(I)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22인

나. 제 안 일 : 2026. 2. 4.

다. 회 부 일 : 2026. 2. 5.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박정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5.

다. 회 부 일 : 2026. 2. 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유지 과정에서 취득세·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김병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병주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6. 2. 26.

다. 회 부 일 : 2026. 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이성권(I)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3. 3.

다. 회 부 일 : 2026. 3. 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박충권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4. 3.

다. 회 부 일 : 2026. 4. 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김은혜(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나. 제 안 일 : 2026. 4. 13.

다. 회 부 일 : 2026. 4. 14.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성범(I)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안철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신성범(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22.

다. 회 부 일 : 2026. 4. 2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이상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4. 24.

다. 회 부 일 : 2026. 4. 2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이성권(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5. 4.

다. 회 부 일 : 2026. 5. 6.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엄태영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5. 6.

다. 회 부 일 : 2026. 5.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0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연장(이만희 I·Ⅲ·이성권 I·신성범 I 의원안)

개정안들은 자경농민¹⁾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 조성 목적 임야, 농업 목적 취득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1항 및 제2항).

현행	이성권 I 의원안	이만희 I·Ⅲ 의원안	신성범 I 의원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 ²⁾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1) “자경농민”은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의미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어업인 및 청년	-----	-----	-----
농어업인 육성	-----	-----	-----
·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8조에	-----	-----	-----
따른 후계농업	-----	-----	-----
경영인 및 청년	-----	-----	-----
창업형 후계농	-----	-----	-----
업경영인(이하	-----	-----	-----
이 조에서 “자	-----	-----	-----
경농민”이라 한	-----	-----	-----
다)이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기	-----	-----	-----
준에 따라 직접	-----	-----	-----
경작할 목적으	-----	-----	-----
로 취득하는 대	-----	-----	-----
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농지(이하	-----	-----	-----
이 절에서 “농	-----	-----	-----
지”라 한다) 및	-----	-----	-----
관계 법령에 따	-----	-----	-----
라 농지를 조성	-----	-----	-----
하기 위하여 취	-----	-----	-----
득하는 임야에	-----	-----	-----
대해서는 취득	-----	-----	-----
세의 100분의 5	-----	-----	-----
0을 2026년 12	-----2029년	-----2030년	-----2031년
월 31일까지 경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감한다. 다만,	-----	-----	-----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경우 그	-----	-----	-----
해당 부분에 대	-----	-----	-----
해서는 경감된	-----	-----	-----
취득세를 추정	-----	-----	-----
한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② -----	② -----	② -----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시설로	-----	-----	-----
서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기준	-----	-----	-----
에 적합한 시설	-----	-----	-----
을 농업용으로	-----	-----	-----
직접 사용하기	-----	-----	-----
위하여 취득하	-----	-----	-----
는 경우 해당	-----	-----	-----
농업용 시설에	-----	-----	-----
대해서는 취득	-----	-----	-----
세의 100분의 5	-----	-----	-----
0을 <u>2026년 12</u>	---- <u>2029년 12</u>	---- <u>2030년 12</u>	---- <u>2031년 12</u>
<u>월 31일</u> 까지 경	<u>월 31일</u> -----	<u>월 31일</u> -----	<u>월 31일</u> -----
감한다.	-----.	-----.	-----.
1. 양잠(養蠶)	1. ~ 3. (현행	1. ~ 3. (현행	1. ~ 3. (현행
또는 버섯재	과 같음)	과 같음)	과 같음)
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 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 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 는 시설 3. 창고[저온창 고, 상온창고 (常溫倉庫) 및 농기계보 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2)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자경농민이 일정한 기준³⁾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제1항)와 양잠, 가축 사육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제2항)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성권 I 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이만희 I·Ⅲ의원안은 4년, 신성범 I 의원안은 5년씩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성권 I 의원안	이만희 I·III 의원안	신성범 I 의원안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6①·②)	감면 대상자	자경농민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농지·농지 조성용 임야·농업용시설			
	감면 내용	취득세 50%			
	일몰 기한	~2026년	~2029년	~2030년	~2031년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87억원, 제6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74억원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제6조제1항 및 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농지·농지조성 임야(제1항)		농업용 시설(제2항)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54,907	81,996,480	7,601	7,905,157
2023	47,906	67,042,387	6,661	7,153,681
2024	54,293	87,145,095	5,316	7,167,500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만희Ⅲ의원안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3,149.1억원(연평균 78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⁴⁾, 이만희 I 의원안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296.4억원(연평균 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됨⁵⁾.

또한, 이성권 I 의원안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9

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2. 9.)

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2. 9.)

년까지 3년간 총 2,758.2억원(연평균 91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⁶⁾, 신성범 I 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97억원(연평균 91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⁷⁾.

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2.)

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4.)

2.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연장(이만희Ⅱ의원안)

개정안은 자영어민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특정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illegible]

8) 「자영어민」은 ①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을 의미함.

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2030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영업민이 일정한 기준¹⁰⁾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20톤 이상 어선, 육상

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권·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어업권·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일 것
-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일 것
2. 어업권·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양식장과 소유 어장·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수양식어업 등 어업용 취득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만희 II 의원안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9①)	감면 대상자	자영어민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	
	감면 내용	취득세 50%	
	일몰 기한	~2026년	~2030년

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어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억 4,200만원임.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제9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감면건수	감면액
2022	329	408,354
2023	281	334,478
2024	345	583,174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
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
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만희Ⅱ의원안에 따라 자영어민의 농어
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22.4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
으로 추계됨¹¹⁾.

1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2. 9.)

3. 농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이만희Ⅳ·이성권Ⅰ·신성범Ⅰ 의원안)

개정안들은 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②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④ · ⑤ (생 략)	월 31일----- -----. ④ · ⑤ (현행 과 같음)	월 31일----- -----. ④ · ⑤ (현행 과 같음)	월 31일----- -----. ④ · ⑤ (현행 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①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제1항)¹²⁾.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염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제3항).

이성권 I 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만희 IV의원안은 4년, 신성범 I 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모두 농업·어업·산림업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소득 증

12) 이때, 농업중앙회에 대해서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성권 I 의원안	이만희 IV 의원안	신성범 I 의원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14①)	감면 대상자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단, 농협중앙회는 “3.” 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25%			
	일몰 기한	~2026년	~2029년	~2030년	~2031년
농협 등에 대한 감면 (§14③)	감면 대상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100%			
	일몰 기한	~2026년	~2029년	~2030년	~2031년

1차 산업의 효율적인 영위를 도모하게 하고 적정 수준의 농림수산업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농협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7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억 7,500만원이며, 제1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74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59억원임.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제14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15	82,832	306	452,775
2023	10	22,968	290	425,253
2024	10	66,896	279	547,244

<농협 등에 대한 감면(제14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1,382	27,237,643	14,960	26,240,513
2023	1,254	27,564,289	15,135	24,988,014
2024	1,198	27,625,745	15,361	26,532,072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만희Ⅳ의원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2,157.1억원(연평균 53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¹³⁾, 이성권Ⅰ의원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617.9억원(연평균 53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¹⁴⁾.

또한, 신성범Ⅰ의원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141.5억원(연평균 53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¹⁵⁾.

1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2. 9.)

1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2.)

1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4.)

4.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연장(이성권 I·신성범 I 의원안)

개정안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¹⁶⁾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 3).

16)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는 농업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2012년에 신설된 회사로 농협중앙회가 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illegible]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사업 중 농업·축산경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회사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축산경제사업 등에 관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중앙회로 보아 구매·판매사업 수행 시 양자 간의 동일성이 인정됨.¹⁷⁾

17)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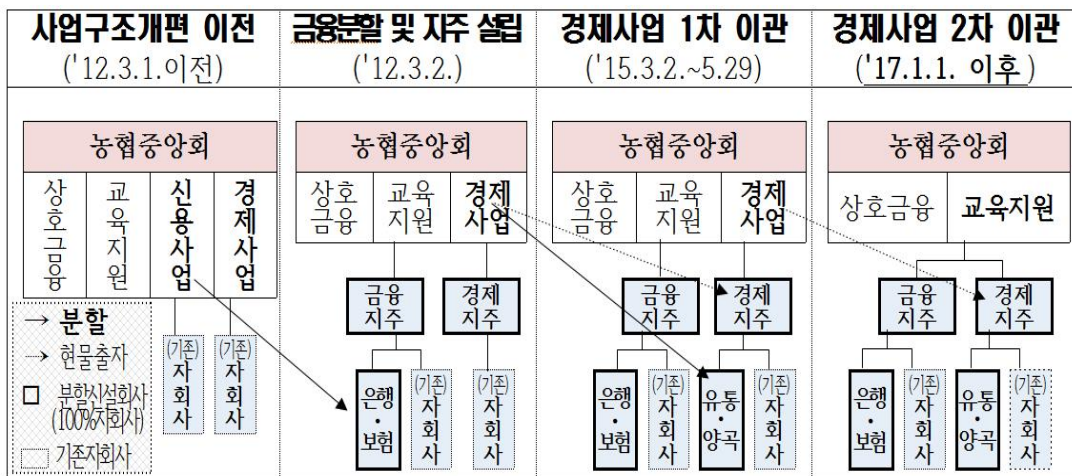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농협경제지주회사 개요>

□ 설립목적

- 농업경제,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 기여

□ 개편 연혁



□ 주요 업무

- **(원예사업)**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및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개선
- **(양곡사업)** 곡류 수급조절 기반구축으로 가격안정 및 식량안보 확보 추진 등
- **(자재·에너지 사업)** 영농자재 가격경쟁력 강화위한 각종 제도도입으로 영농비 절감 추진 및 농협주유소 유류 저가공급으로 국민 체감물가 안정화
- **(축산산업)** 가축개량을 통한 우수종축 공급으로 농가 실익 제고 및 사료가격 안정화로 농가 생산비용 절감 지원
- **(도매·공판사업)** 유통채널별 마케팅 추진으로 농·축산물 책임판매 확대 및 온라인 도매사업 육성으로 공판장 판매채널 다각화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기존 농협중앙회가 영위하던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었고, 이러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7년 말까지 각 25% 감면하는 제14조의2¹⁸⁾를 신설하였으나, 별도의 일몰기한 연장 없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이 종료되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 및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수행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¹⁹⁾,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①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신설되었음.

1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

19) 제21대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2.06.) 회의록 참조

<현행법상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체계>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사업			감면적용
	구매·판매 등	생산·검사	교육시설	
농협중앙회	-	-	○	§14
농협경제지주회사	○	○	-	§14의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14
산림조합중앙회	○	○	○	§14

※ 모두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이성권 I 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신성범 I 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모두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촉진에 노력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²⁰⁾.

20)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성권 I 의원안	신성범 I 의원안
농협경제지주회사 에 대한 감면 (§14의3)	감면 대상자	농협경제지주회사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구매·판매 사업 등 직접 사용 부동산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 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25%		
	일몰 기한	<u>~2026년</u>	<u>~2029년</u>	<u>~2031년</u>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인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수행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타 협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약 7,3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약 3억 7,000만원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성권 I 의원안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3.2억원(연평균 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²¹⁾, 신성범 I 의원안에 따라 동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2억원(연평균 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²²⁾.

2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2.)

2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4.)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철수·엄태영의원안)

개정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안철수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

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함)²³⁾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방세를 차등하여 감면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특정 무료 노인복지시설²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

2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²⁵⁾) 및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²⁶⁾을 면제함. 또한,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안철수의원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임태영의원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각각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25)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6)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안철수의원안	엄태영의원안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20①)	감면 대상	① 무료 노인복지시설	(현행과 같음)	
		② 유료 노인복지시설		
		③ 경로당		
	감면 내용	① 취득세 100%, 재산세 50%		
		② 취득세·재산세 25%		
		③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100%		
	일몰 기한	~2026년	~2028년	~2029년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로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 지원 및 안전망 기능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416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억 4,800만원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0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1,035	41,406,321	25,236	5,059,746	7,429	82,156
2023	886	40,393,011	27,788	5,678,864	7,587	71,631
2024	930	43,208,589	28,293	6,430,016	7,568	590,667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안철수의원안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1,340.5억 원(연평균 67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²⁷⁾, 임태영의원안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920.4억 원(연평균 640.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²⁸⁾.

2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3. 13.)

2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5. 7.)

6. 공익적 목적 사용 종교단체 취득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신성법 II의원안)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⑥ (생략) <u><신설></u>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와 같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²⁹⁾하고 있음³⁰⁾³¹⁾.

29) 단, 주민세 사업소분은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한정되며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30) 그 외에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고,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 있음.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감면내용
종교단체·향교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100%
	고유목적 사용 면허	등록면허세 100%
	해당 단체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종교단체·향교 전력제공자	전력 제공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시설분) 100%
종교단체	사찰림·전통사찰보존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법인	사업장 중 종교의식 행하는 교회·사찰 등	주민세 사업소분 100%

※ 단, 수익사업 사용 시 감면 배제 또는 추징

이때,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부동산을 그 취득일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있음³²⁾.

그런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민영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일명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공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공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³³⁾,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³⁵⁾.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주민에게 개방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 목적 사용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사유지를 개방하도록 유인하려는 취지로 보임.

33) 현재 「주차공유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7곳(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제주)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4곳임.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34)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2026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개방 시 주차장시설개선 또는 운영수익 보전 지원 명목의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1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35) 또한, 과거 울산광역시의 경우 2년 이상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비 있음(관련 기사 : “”주차 공간 나누면 세금 깎아드려요”“. 세계일보, 2022.2.25.)

<신성범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신성범 II 의원안
공적목적 사용 종교단체 취득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 (§50⑦)	감면 대상자	<u><신 설></u>	종교단체
	감면 대상		공익적 목적 사용 부동산 (광역시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限)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일몰 기한		-

세제혜택을 통해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동 감면 신설 여부와 관련해서는 타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부, 감면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³⁶⁾.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주민개방 등 공익적 목적” 취득 부동산을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주차장 개방 등 사용 범위를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감면대상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차장 개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종교용도 직접사용 및 수익사업 등의 추정사유에 예외를 두는 것은 기존 종교감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개정안의 감면은 일부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필요시 감면 필요성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신설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연장(박정하의원안)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관 및 문화예술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 5. (현행과 같음)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①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등 체육진흥기관과 ②한국 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화 예술기관이 각각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동 감면 특례는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29.)에 따라 2024년부터 신설되었는데,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박정하의원안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52의2)	감면 대상자	① 체육진흥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② 문화예술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 국영상자료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체육진흥사업·문화예술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재산세 50%	
	일몰 기한	~2026년	~2029년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 지
원을 위해 지방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감면 대상 기관의 주요 역할>

구분		역할
체육진흥기관	대한체육회	국대선수촌 운영 등 전문체육진흥, 동호인 활동 등 생활체육진흥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전문·장애인 체육진흥 및 서울올림픽 시설물 운영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구분		역할
문화예술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전문인력양성 등
	예술의전당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 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육 등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자료의 수집·보존·복원

한편,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약 6,3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약 16억 7,300만원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정하의원안에 따라 체육진흥기관 및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 수는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52.2억원(연평균 1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³⁷⁾.

3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3. 4.)

8.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김태선Ⅱ·김은혜 I 의원안)

개정안은 ① 벤처기업³⁸⁾집적시설³⁹⁾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⁴⁰⁾을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②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김은혜 I 의원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 ③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임(김태선Ⅱ·김은혜 I 의원안 제58조제3항).

현행	김태선Ⅱ 의원안	김은혜 I 의원안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38)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10% 이상인 기업, ②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을 의미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2조의2).

39)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의미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0)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 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29년 12월 31일

[illegible]

②

9년 12월 31일-----
-----.

[illegible]

③ -----

-----20

29년 12월 31일-----

일까지 감면하고 있음(제2항).

또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특정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함)⁴²⁾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비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6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제3항).

김은혜 I 의원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태선 II 의원안은 제3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지원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김태선 II·김은혜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태선 II 의원안	김은혜 I 의원안
벤처기업집적 시설·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사업시행자 감면 (§58①)	감면 대상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사업시행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분양·임대·직접사용 부동산 (직접사용:벤처기업 限)		
	감면 내용	취득세 35% 재산세 35%(비수도권 60%)		
	일몰 기한	<u>~2026년</u>	(현행과 같음)	<u>~2029년</u>
벤처기업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 감면 (§58②)	감면 대상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해당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비수도권 60%)		
	일몰 기한	<u>~2026년</u>	(현행과 같음)	<u>~2029년</u>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신·증축자 감면 (§58③)	감면 대상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용 건축물등 신·증축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3년간 50% (비수도권 60%)		
	일몰 기한	<u>~2026년</u>	<u>~2028년</u>	<u>~2029년</u>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산업 혁신을 도모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8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5억원이며, 제5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3억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700만원이며, 제5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80만원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제58조제1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9	409,184	454	1,609,709
2023	9	468,283	572	1,935,690
2024	7	4,542,274	412	967,812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58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	-	5	363
2023	-	-	2	266
2024	48	940,533	112	81,427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신·증축자에 대한 감면(제58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	-	8	4,299
2023	-	-	6	1,010
2024	-	-	2	116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은혜 I 의원안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96.0억원(연평균 6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⁴³⁾, 김태선 II 의원안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신·증축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만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
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1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⁴⁴⁾.

4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3. 31.)

4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3. 31.)

9.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김태선Ⅱ의원안)

개정안은 학교등⁴⁵⁾이 창업보육센터⁴⁶⁾의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45)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른 “학교등”인데 이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6)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는 것
 -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비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학교등일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김태선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태선 II 의원안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 (§60③)	감면 대상자	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등 外) ②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등)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내용	① 취득세 50% 재산세 50%(비수도권 60%)	
		② 취득세 75% 재산세 100%(도시지역분 포함)	
	일몰 기한	~2026년	① (현행과 같음) ② ~2028년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감면 연장 여부는 학교등 외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억 7,800만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4억원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제60조제3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9	409,184	454	1,609,709
2023	4	426,182	514	1,390,120
2024	—	—	477	1,203,081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김태선Ⅱ의원안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24.1억원(연평균 12.0억원) 감소할 것으로 것으로 추계됨⁴⁸⁾.

4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3. 31.)

10.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김태선 I 의원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함)이 3등급 이상인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 12. 31. 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⁴⁹⁾,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2]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적용기술의 난이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친환경등급이 부여됨.

<환경친화적 선박 및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개요>

□ 환경친화적 선박

- (법적근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1) 해양오염저감기술(스크러버, SCR 등) 또는 선박에너지 효율향상기술(에너지 저감장치, 연료탱크 경량화 등) 적용 선박
 - 2) 환경친화적 에너지(LNG, CN6 등),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 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추진 선박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제도

- (법적근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도개념)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기술·제품 등을 적용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인증 등급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
- (인증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2]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토대로 친환경선박 평가위원회에서 점수 산출 후 인증등급 부여
- ※ 선박에 적용된 기술 난이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율 등을 고려하여 인증등급 부여(~5등급)
(점수 환산 100점 기준 : 65점 이상 1등급, 50점 이상 2등급, 40점이상 3등급)

※ 자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 참조

4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에 한해 「지방세법」에 따른 선박의 취득세⁵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⁵¹⁾하고 있음.

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 친환경선박 도입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례를 통해 선박 배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으로 국내 항만 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12.29.)에 따라 해당 특례가 도입되었음⁵²⁾.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임.

50)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登記·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 5) 삭제 <2014. 1. 1.>
-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④ (본문 생략)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52) 제21대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2.06.) 회의록 참조

<김태선 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태선 I 의원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64④)	감면 대상자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내 선박 (선박 취득일 60일 이내 3등급 인증 포함)	
	감면 내용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에 따른 취득세율 경감	
		1등급 : 취득세율 2%p	
		2등급 : 취득세율 1.5%p	
		3등급 : 취득세율 10%p	
	일몰 기한	~2026년	~2028년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를 신설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나, 감면 연장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실적은 4건, 감면액은 약 3억 9,800만원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일몰도래 예정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므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태선 I 의원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8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⁵³⁾.

5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2. 11.)

11.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정비(김은혜Ⅱ의원안)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고 함)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산 총액과 무관하게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 ----- ----- ----- ----- ----- ----- ----- ----- ----- ----- ----- ----- ----- -----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⁵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⁵⁵⁾에

54)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55)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항공기

-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8.12.24.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대형항공사⁵⁶⁾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⁵⁷⁾,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지적되어 한시적으로 3년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며⁵⁸⁾⁵⁹⁾,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항공업계를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음⁶⁰⁾.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57)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 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58) 구체적으로, 2019년 법안심사 당시 대형항공사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후 2021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형항공사의 경우 다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년의 한시감면을 도입하였음

(제21대국회 제391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1.30.), 제21대국회 제391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2.02.) 회의록 참조)

59) 구체적으로, 2023년 한시감면 종료로 인한 법안 심사 당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경영 회복이 필요한 점,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감면이 2024년 종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이 1년 연장되었음

제21대국회 제410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2.07.) 회의록 참조

60) 제22대국회 제419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7.), 제22대국회 제420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 회의록 참조

<대형항공사·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혁>

구분	취득세	재산세		
		2018년 이전	2019년~2021년	2022년~
저비용 항공사	1.2%p 경감	5년간 50%	5년간 50%	5년간 50%
대형 항공사			-	

※ 주) 저비용항공사 :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등
대형항공사 : 대한항공

개정안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

<김은혜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은혜 II 의원안
항공운송사업자 에 대한 감면 (§65)	감면 대상자	항공운송사업자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 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사용 목적 사업	
	감면 내용	취득세율 1.2%p	(현행과 같음)
		재산세 5년간 50%	'27년까지 재산세 100% , 그 이후 재산세 50% (기한X)
	일몰 기한	~2027년	(현행과 같음)

※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 2.0~2.02%

이는 최근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항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특히 항공유 급등으로 인해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이나, 이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으로 유가·환율 등이 상승하여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나, 유류할증료 인상을 통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승객에게 전가하여 손실 일부 보전하고 있다는 점, 대형항공사의 경우 화물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항공화물 운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최근 업계의 어려움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영향에 불과하며, 산업·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감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구분	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정부 재정악화, 과세형평성 훼손, 세제지원의 남용 가능성 등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
부산광역시	업종간 형평성, 자체비용 보전(유류할증료), 지방세수 감소 등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조세지원보다는 고유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이 타당하며, 지방세수 감소, 취득세 세율특례 외 추가적인 감면은 과도한 혜택인 점, 담세력 등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
경상남도	조세형평성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면제범위 및 감면율의 적정성, 일시적인 대외경제 상황에 대하여 무기한 감면을 확대하는 입법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한 점 등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액이 약 3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인 점, 이미 재산세 50% 감면을 지원 받고 있는 점, 감면확대의 효과가 항공업계에 집중되는 점 등 고려하여 현행 유지 필요

※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은혜Ⅱ의원안에 따라 항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경감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4년간 총 695.4억원(연평균 13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⁶¹⁾.

6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3.)

12.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자에 대한 감면 신설 등(박충권의원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⁶²⁾의 지정 및 승계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기본세율에 대한 감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u>받거나 지정을 신청한</u> ----- ----- <u>승계하였</u> <u>거나 승계를 신청한</u> ----- ----- ----- ----- ----- ----- ----- ----- ----- ----- ----- ----- ----- ----- ----- ----- -----

62)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의미하며,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과 같은 사무를 관장함(「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조).

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u>사업소분</u>(「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u>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신청한 후 지정·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u> ② ----- ----- ----- ----- ----- -----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업소분-----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별정우체국법」⁶³⁾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승계한 자(이하 “피지정자”라고 함)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2%p)를 감면하고 있으며,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며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때,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세법」 제81조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따른 세율만 면제하고 동조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은 과세하고 있음⁶⁴⁾.

63)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64)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세목별 주민세 현황>

세목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비과세대상 등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 조례로 결정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등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 5~20만원 + (연면적) 250원/㎡	연면적 330㎡ ↓
종업원분		월지급 급여액 0.5%	12월 간 급여총액 평균 1.8억원 ↓

개정안은 동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별정우체국 지정 및 승계를 신청한 자를 포함하면서 지정 및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을 기본세율까지 확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박충권의원안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72①·②)	감면 대상자	피지정자 (별정우체국 지정 승계인 포함)	피지정자 (별정우체국 지정·승계인· 지정·승계 신청인 포함)
	감면 대상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사업소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① 취득세율 2%p 경감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③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연면적 한정	③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연면적 한정 X
		④ <신 설>	④ 지역자원시설세 10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구분		현행	박충권의원안
	일몰 기한	<u>~2028년</u>	(현행과 같음)
	추정 사유	① 취득 5년 內 수익사업 사용	①~③ (현행과 같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1년 內 해당 용도 직접 미사용	
		③ 해당 용도 직접 사용 2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증여 및 타 용도 사용	
		④ <신 설>	④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X

이는 「별정우체국법」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받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지정·승계를 신청하기 전 별정우체국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보유하게 된다는 점⁶⁵⁾⁶⁶⁾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별정우체국이 읍·면 지역 등 행정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서 우체국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별정우체국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

65)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6) 한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표1]은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으로 최소 200제곱미터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음

면이 있어 보이나,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감면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신청인을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간주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어 타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대상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⁶⁷⁾, 부동산을 별정우체국에 직접 사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신청인에게 감면을 적용할 경우 현행법상 감면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⁶⁸⁾.

둘째, 감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주민세 감면의 효과성⁶⁹⁾, 타 감면규정과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당초 별정우체국에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

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68) 한편,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세 특례의 경우 지정 또는 인가 등을 신청한 자'까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

69) 특히,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별정우체국 중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면세되는 지점은 9국으로 전체의 1.3%이므로 해당 감면을 유지할 실익이 굉장히 적고 규모가 큰 일부 별정우체국에 대해서만 감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였으나, 목적세 성격의 세목 감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⁷⁰⁾로 2020.1.15. 개정을 통해 감면을 종료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100만 원,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억 8,400만원,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5,600만원임⁷¹⁾.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현황(제72조)>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16	33,641	1,571	192,240	118	89,141
2023	29	11,525	1,560	178,218	129	75,086
2024	10	18,480	1,555	183,198	66	5,596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감면대상 확대는 권리의무가 불확실한 신청단계로 확대하는 것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신청자에게도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점, 취득 이전이라도 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70)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71) 또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별정우체국에 대한 신규사업자 지정이 없었음

등 증빙서류로 지정·승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감면 세목 확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거쳐 '19년도에 종료되었다는 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소에 연간 5~20만원 수준으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보편적 세목으로 감면효과성 및 담세력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충권의원안에 따라 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을 면제하고, 별정부동산 지정·승계 신청인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지방세수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1.35억 원(연평균 0.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⁷²⁾.

7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4. 22.)

1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김병주의원안)

개정안은 군유휴지⁷³⁾ 및 군유휴지주변지역⁷⁴⁾에서 창업, 본점이전, 공장 신·증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기회발전특구⁷⁵⁾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u>기회발전특구</u> 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0조의2(<u>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u>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 ----- ---한다) 및 「 <u>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이하 이 조에서 “ <u>군유휴지등</u> ”이라 한다)-----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73) 이는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를 의미함.

74) 이는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연결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군유휴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75)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의미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②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② -----

-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으로

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①기회발전특구에서 일정한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 창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⁷⁶⁾하고⁷⁷⁾(제1항), ②수도권⁷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⁷⁹⁾(제2항), ③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⁸⁰⁾하면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⁸¹⁾를 감면하고 있음(제3항).

개정안은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

76)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77)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78) 단,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을 제외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79)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80)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

81)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분의 35

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동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에 동 제정안에 따른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것임.

동 제정안에 의하면 군유휴지등은 국방개혁기본계획⁸²⁾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및 해당 부지 소재 읍·면·동 지역을 의미하는데, 개정안은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 군유휴지등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8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김병주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김병주의원안
군유휴지등내 창업기업 등 감면 (§80의2)	감면 대상자	기회발전특구 내	기회발전특구· 군유휴지등 내
		① 창업 기업	(현행과 같음)
		② 수도권 ~~수도권~~ 외 이전 기업	
		③ 공장 신·증설 기업	
	감면 대상	사업용 부동산	(현행과 같음)
	감면 내용	① 취득세 50% +50(25)%(조례) 재산세 5년간 100% +5년간 50%(조례, 수도권 외 限) (수도권 3년 100%, 2년 50%)	
		② 취득세 50%+50%(조례) 재산세 5년간 100% +5년간 50%(조례)	
		③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5년간 75% (수도권 5년 35%)	
	일몰 기한	~2026년	

군유휴지등 내 창업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특례 신설 여부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 특례의 실효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군유휴지등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과 연계되어 심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7059호)⁸³⁾이 계류 중인 국방위원회의 심사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동 개정안은 세제 감면대상인 ‘군유휴지’ 등을 인용하는 법률안의 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 후 지원 필요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3) 2026.02.26. 발의, 2026.07.28. 기준 국방위원회 미상정

14.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재신설(이성권Ⅱ의원안)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재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었음.

그런데, 해당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를 이유로 일몰을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운동단체의 역할·현실적 재정분담 등을 이유로 일몰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⁸⁴⁾ 논의를 거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방세 감면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은 일몰되었음⁸⁵⁾.

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을 재개하면서 감면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⁸⁶⁾을 고려하여 타 국민운동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성권 II 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성권 II 의원안
한국자유총연맹 에 대한 감면 재신설 (§88②)	감면 대상자	한국자유총연맹	(현행과 같음)
	감면 대상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	
	감면 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일몰 기한	<u>~2025년</u> (일몰종료)	<u>~2028년</u>

84) 제22대국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회의록 참조

85) 한편,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그간 수행해 온 역할과 현실적인 재정 분담을 감안할 때, 한국자유총연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별건으로 다루어야 하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이라는 소수의견을 첨부하였음.

8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국민운동단체로 공익적 성격이 있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감면 재개 여부는 법안 심사 당시 감면 종료를 결정한 취지, 소급 적용의 적정성, 지방재정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1,500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1억 7,000만원임.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제88조제2항)>

(단위: 건, 천 원)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22	-	-	35	195,245
2023	-	-	37	134,983
2024	1	451,329	40	184,181

※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작년에 일몰이 종료되어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시 지방세를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성권Ⅱ의원안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18.7억원(연평균 6.2억원) 감소할 것으로 것으로 추계됨⁸⁷⁾.

8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6. 5. 7.)

1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신설(이상식의원안)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92조의4(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소득세법」⁸⁸⁾ 및 「법인세법」⁸⁹⁾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세무사 등⁹⁰⁾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120만원(법인의 경우 150만원) 한도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규정

88)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0)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하고 있음⁹¹⁾⁹²⁾).

9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2)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의료비, 월세액 등을 공제하는 등의 특례도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제도

- **(개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
- **(대상)** 특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개인)>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 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법인)>

구분	내용
소규모 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i)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절차)**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혜택)** ^{개인}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 및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법인}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 안내 및 법인신고 안내 항목의 성실신고 확인제 부분 참조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⁹³⁾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기업회계 등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등⁹⁴⁾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도록 하는 외부조정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인 법인세와 연계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⁹⁵⁾⁹⁶⁾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93)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변호사

9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95)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6) 한편, 국세의 소득세와 연계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⁹⁷⁾, 이에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591호,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음⁹⁸⁾.

개정안은 취득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120만원(법인의 경우 150만원)의 범위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감면하고,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이상식의원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신설 (\$92의4)	감면 대상자	<신 설>	성실신고확인 제출자
	감면 내용		취득세 5% ※ 120만원(법인 150만원) 한도(조례)
	추징 규정		취득당시가액 10% 이상 과소 신고 시 전액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59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591호)

제2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제10조의4에 따라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취득당시가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국세와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국세의 감면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른 감면을 및 감면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에 적정한지 여부, 감면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면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이행을 전제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여부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범위 등이 구체화된 후 감면 필요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세무사회는 취득세 세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신고납부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